

##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(수색·DMC역 특별계획구역10 주거복합 신축공사)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7호)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03.30.

### 은 평 구 청 장

- 공 고 명: 증산동 223-15 외 10필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
- 시 공 사: 현대건설(주)
-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
  -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: (주)태경에스이

#### 4.평가점수

연 번 (순위)	상 호	배 점(100)
1	(주)태경에스이	97

※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, 2023.04.06.(목)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